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6. 27 선고 2023가단6099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5. 23.

판 결 선 고 2024. 6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, ⑧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69.48㎡를 인도하고,

나. 2021. 11. 6.부터 위 가항 기재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원신

별지